의안번호	제 92 호
의 결	2007년 3 월 28 일
연 월 일	(제258회)

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07년 3월 1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

의 안 번 호 92

제출년월일 : 2007년 3월 12일

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#### 1. 제안이유

○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 조사 및 활용 등(안 6조)
-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(안 9조)
-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10조)
  -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안정적, 지속적, 재정적으로 지원
  -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- 균형발전 "연구전담팀" 및 "지역협력단" 구성·운영(안 제15조)
  -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전담팀을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연구
  - 공공연구기관에 지역협력단을 설치하여 평가 및 컨설팅 실시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지역균형발전"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"이라 함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하다.
  - 3. "낙후지역"이라 함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충청북도(이하"도"라 한다)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시·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·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

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
- 3. 지역별,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 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
- ④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- 제5조(시행계획 수립) 도지사는 제4조 1항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** ①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.
  - ②도지사는 불균형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) ①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·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②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)** ①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 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.
  - ②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·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

- 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한다. 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  - 2.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
  - 3. 차입금
  -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
    - 2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
    - 3.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
    - 4. 예비비 등
- 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 ①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·군 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,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  - ②도지사는 2 이상의 낙후지역 시·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
- 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)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

제14조(위원회 설치) ①지역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이 위원회는 「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」에 의하여 설치된 "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"로 대체할 수 있다.

- 제15조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 ①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충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"연구전담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, 권역내의 대학교수, 전문가, 공무원, 의회 의원,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③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, 추진과정,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 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다.
  - ④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 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보 칙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 (-)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# □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

제33조 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 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